

알 림

- 선거규정위반 조합원 징계에 대하여 -

◦ 본 조합 상별위원회에서는 제13대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규정 제23조(선거운동의 금지)4항 위반 유언비어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 허위사실 유포) 불법 찌라시 배포, 합동 연설회장에서의 연설중단 행위 등 선거규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2019.11.13)한 건에 대하여

◦ 본 상별위원회는 11월 26일 회의를 개최하여 남** 조합원 16회에 걸쳐 선거규정을 위반하고, 이** 조합원 찌라시 배포 행위 1회 선거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명처리 등 강력하게 처벌하여 조합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 되었으나 징계 당사자들의 반성,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감안하고 조합원들의 화합과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경고”처분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다음 선거에서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조합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조합발전을 저해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선거규정을 더욱 강력하게 개정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선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합을 분열시키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의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 11. 28.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

